

---

#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

---

2023. 3.

##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

[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]

# 순서

I. 은행권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	1
1. 대출이동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	1
2.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	2
3. 인터넷은행-지방은행 상생 공동대출	3
II. 영업범위 확대 관련 건의사항	4
1. 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적용 완화 요청	4
2. 상장지수펀드(ETF) 중개 스몰-라이선스 요청	6
3. 인터넷전문은행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건의	7
4.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업무 허용	8
III. 기타 건의사항	9
1.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신용공여	9
2. 예대금리차 공시에 은행의 포용성 반영	11
3. 구속성 행위 관련 규제 개선	12

# I. 은행간 경쟁 확대 방안

## 1 대출이동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

- **(현황)** '23.5월부터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『대출이동제』는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
- **(제도개선 방향)** 은행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함
- **(건의사항)** ①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②차주단위 DSR미적용, ③중·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, ④대상대출 확대 ⑤한도설정 등이 필요
  - ①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 소비자의 금융비용(이자비용+수수료) 절감 등 대출이동제 취지를 고려해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필요
  - ② (DSR 완화) 차주단위 DSR 규제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한해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요망
    - \* (사례) 현재 판매 중인 트레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단위 DSR 규제 미적용 중
  - ③ (중저신용자 비중 제외)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대출이동제로 고객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건에 대해서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하여,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 유도 필요
  - ④ (이동제 대상 확대) “가계 신용 및 담보대출”이외에 “개인사업자대출” 등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 필요
  - ⑤ (한도설정 관련) 금융소비자 편의증진을 최우선 고려하여 취급 한도 설정을 폐지하거나 취급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규모로 이동한도를 설정 검토 요망

## 2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

- **(현황)** 인터넷전문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그동안 중·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·취급하여 왔음

<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실적 및 향후목표>

구분	취급 실적						향후 목표		
	'21년말 기준			'22년말 기준			'23년말 기준		
	케이	카카오	토스	케이	카카오	토스	케이	카카오	토스
비중	16.6%	17.9%	23.9%	25.1%	25.4%	40.4%	32.0%	30.0%	44.0%

- **(제도개선 필요성)** 중·저신용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및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 등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'메기' 역할 수행에는 한계 존재

- ① **(금리인하 유도)**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시,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인하 경쟁 기대

<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>

구분	시중은행				인터넷전문은행	
	국민	신한	우리	하나	케이	카카오
최근 3개월 평균금리*	5.16%	5.23%	5.27%	4.77%	4.52%	4.39%

\* '22.12~'23.2월 중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단순평균 금리(출처: 은행연합회 홈페이지)

- ② **(건전성 악화)**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서는 급격한 중·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도 고려 필요

<주요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\* 변화 추이>

구분	2020.12월말	2021.12월말	2022.9월말	2022.12월말
4대 시중은행 (증감)	0.18% (-)	0.14% (△0.04%p)	0.16% (+0.02%p)	미공시
인터넷전문은행 (증감)	0.29% (-)	0.26% (△0.03%p)	0.44% (+0.18%p)	0.63% (+0.1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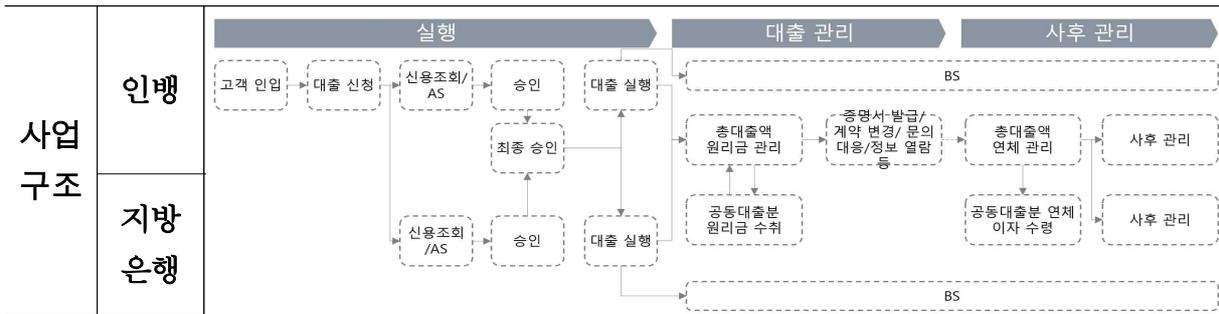
\*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별(토스 제외) 가중평균 연체율(출처: 금융통계정보시스템)

- **(제도 개선)** 최근 유례없는 금리상승기에 은행권의 금리경쟁 유도를 위한 중·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\*

\* (케이, 카카오) 목표비율 완화 또는 유예, (토스) 완화시 인터넷은행 동일비율 부여

### 3 인터넷은행-지방은행 상생모델 '공동대출(안)' 도입

- **(추진배경)**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 및 경영상의 강점을 유연하게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혜택을 제공하고,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 완화
- **(공동대출(안) 모델 개요)**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(이하 인뱅)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상품
  - ① **(실행)** 고객이 인뱅 앱에서 대출 신청 → 인뱅-지방은행 각각 심사 → 대출 실행(양행 모두에서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)
  - ② **(대고객업무)** 인뱅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
  - ③ **(사후관리)** 두 개 은행이 각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사후관리 주체가 되나,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



※ 미국,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(Co-lending) 상품이 既출시된 바 있음

- **(기대효과)**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,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 강화
  - ⇒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,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

## II. 영업범위 확대 관련 요청사항

### 1 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적용 완화 요청

#### [1-1]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일부 대면업무 허용

□ **(현황)**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에 의거 비대면 영업방식 제한

※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

□ **(제도개선 방향)** 대면 업무수행이 필히 수반되거나, 아파트 집단대출(중도금·잔금) 상품 취급,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방문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업무 일부 허용 필요

#### ※ [예시 ①] 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제휴

- 제휴처에 포스트 부착, 또는 제휴사 직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상품 설명은 가능하나, 상품 추천·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는 대면 영업으로 간주됨

\*제휴 상품·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시행 시에도 정보제공·설명 가능하나 권유는 불가

→ 설명과 추천의 경계가 모호하여 제휴사 직원 등을 통한 상품설명은 현재 진행하지 않음

#### ※ [예시 ②] 아파트집단대출(중도금·잔금) 취급시 시공 현장에서 접수 안내

- X배너 또는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배부(가능)

- 고객이 상품·금리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직접 답변(불가)

\* 설명 자료를 참고하거나, 앱에서 확인하도록 답변해야 함

※ [예시 ③] 지방거주자가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경우, 서울에 위치한 대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 가능

#### ※ [예시 ④] 기업 수신 계좌개설

- 수신 계좌개설 : 기업고객(대표자) 직접 방문 및 대면 미팅을 통한 서류 접수 불가능하며 KYC를 위해서도 대면 업무가 필요함

## [1-2]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신탁 방식 허용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신탁업은 '20.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고시, 이하 개정안)으로 특정금전신탁에 한하여 비대면방식\*의 영업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①비대면 신탁의 범위 및 ②비대면 설명의무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 신탁 활성화 취지가 약화되었음

\* 신탁 업무는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대면방식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

- ① (비대면 신탁범위) 특정금전신탁(투자기능)만 허용함에 따라, 신탁 시장의 큰 축인 재산신탁의 자산관리 측면이 간과
- ② (비대면 설명의무 방식) 영상통화로만 제한하여 개정안의 본래 취지인 신탁 영업 활성화에 애로사항 발생

□ **(제도 개선)** 신탁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해 ①비대면 범위 확대, ②설명방식 다양화, ③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등을 검토 요청

- ① (범위 확대) 신탁의 본래 기능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을 위해 비대면 신탁의 범위를 종합재산신탁으로 확대 요청
- ② (설명방식 다양화) 비대면 신탁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영상 통화 외의 다양한 수단(동영상, AI 등)을 추가\*하여 설명의 효율성 제고 필요
  - 금융위원회는 '설명무기가이드라인('21.7월)'을 통해 설명방식으로 동영상, AI 등이 활용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
  -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8조 :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적용하여 전자서명과 녹취 방식도 인정
- ③ (대면영업 일부허용) 고도화된 신탁상품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도 제한적으로 대면营业을 통해 신탁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

## 2

## 상장지수펀드(ETF) 중개 스몰-라이선스 요청

- **(현황)** 현재 상장지수펀드(이하 ETF)는 시장에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중개\*되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
\* (예시) 고객은 신탁계좌를 개설,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을 대리하여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특정 ETF에 투자하고, 목표가격이 되면 환매하는 방식

- **(문제점)** 신탁보수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

- **(제도 개선)** 'ETF 중개'를 스몰-라이선스화하여 은행(특히, 인터넷전문은행)도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

- ETF는 그 실질이 집합투자증권으로, 펀드 라이선스의 획득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소비자에게 중개하는 부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,

- 이를 통해 수수료 절감 등 유형의 이익과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소비자 무형의 효익 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

⇒ 특히, 비대면채널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이 ETF 중개 시장에 진입할 경우, ETF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활발한 수수료 인하 경쟁 가능

- **(현황)** 금융기관은 보험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 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%를 초과할 수 없음(25%룰)

<관련 법적 근거 - 보험업법 시행령>

▶ 제40조 (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)

-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(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)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(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)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체약보험회사"라 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.

- **(문제점)** 25%룰은 영업점에서 특정보험사 상품 '밀어주기'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원이 고객 상품선택에 개입할 수 없음

- 25%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나열식의 판매만 가능하며,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
- **(제도 개선)** 최근 '어려운 보험'에서 일상에서 소액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'쉬운 보험'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

## 4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 업무 허용

- **(현황)** 은행은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'국고대리점'으로 역할이 가능하며,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일부(카카오뱅크)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승인받아 진행 중임

### <국고대리점 취급 업무>

- ▶ 국고금 수납 : 국세(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), 관세, 기타 국고금(범칙금, 벌과금 등) 수납
- ▶ 국고금 지급 : 정부가 지급요청한 자금을 수취인 계좌로 입금(국세환급금, 정부지출금 등)

- **(문제점)**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고금 수납에 이어 국고금 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, 한국은행의 업무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
- **(제도 개선)** 인터넷전문은행도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으로 국고금 수납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,
  -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시중은행들과 같이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를 요청

### III. 기타 건의사항

#### 1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책임 완화

- **(현황)**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며,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계열회사 등기임원 포함됨

##### <관련 법적 근거>

- ▶ **(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)**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8조
  -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. 기업간 합병, 영업의 양수,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 하여야 함.
- ▶ **(특수관계인)**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
  -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
- ▶ **(벌칙조항)**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21조
  -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

##### ※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도 비교

일반은행	인터넷전문은행
자기자본의 25% 허용 (대주주 출자비율) ※은행법 §35의3	원칙금지 *예외: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※인터넷전문은행법 §8

##### □ **(문제점)**

- ① **(신용공여 관리 업무 부담)** 일반은행은 25% 범위 내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여 한도 관리만을 하면 되므로 신용공여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으나,
-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므로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운영리스크가 있음

② (비대면 특수성) 비대면 즉시거래 특성으로 대주주 해당여부 사전 파악 어려움

-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자동화된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 신청 및 실행이 즉시 이루어지므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(계열 기업 임원)의 대출신청 차단에 한계가 있음

③ (대주주 협조 필요) 대주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수십여 곳으로 재직 임원은 수백명에 이르며,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선임과 퇴임을 IT적인 대출 차단을 위해서는 수십 개 대주주 계열사의 임원 변경 시점마다 개인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대출제한자로 전산에 등록 및 관리해야 함

- 계열기업 임원예정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미리 수집한 후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법 위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200여개가 넘는 계열기업 임원예정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대주주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

□ (제도 개선) <sup>1)</sup>대주주 신용공여를 수시 점검하고, <sup>2)</sup> 발견 즉시 환수조치를 하는 등 관리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하거나 약관의 의한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요청

## 2 예대금리차 공시·산정 개선을 통한 은행의 포용성 강화

- **(현황)** 최근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중

### < 3.3일 금융위 발표 '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' >

- ▶ 현재 공시 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 → 은행별 수익성 파악에 용이
- ▶ 공시 중인 주담대·신용대출에 더해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→ 전세 관련 금리 비교 용이
- ▶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, 가산금리,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 →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 비교에 용이

\* 7월 시행 목표로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추진 중)

- 중저신용자 포용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,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중저신용자를 적극 포용중인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시에서 평판리스크로 작용

### <주요 은행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>

구 분	시중은행 평균* (22.6월말)	인터넷전문은행(22.12월말)		
		토스	케이	카카오
비중	16.7%	40.4%	25.1%	25.4%

\* 출처 : 김성주의원실 보도자료

### <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현황>

구 분	은행권(A)	저축은행권(B)	차이(=B-A)
평균금리	6.66%	16.25%	9.59%p

\* 출처 :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(23.2월말 기준)

- **(건의사항)** 중저신용자 비중을 배점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및 각 은행의 실질적인 포용성을 반영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대금리차 공시·산정방식 개선

### 3 구속행위 관련 규제 개선

- **(현황)** 구속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의 행위 양태 중 하나로서,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동일하게 운영
  
- **(문제점)** 구속행위 규제는 취약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지만, 비대면·모바일을 통한 선택적 은행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금융 편의를 저해
  - 비대면·모바일 채널의 발달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검색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음.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속행위(일명 '꺾기')를 할 수 없는 구조
  - 그러나,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구속행위 관련 규제가 적용되어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
  
- **(개선방안)** 비대면채널만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